

령 제50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(부과대상) 제1호중 “법 제10조제1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”으로, “제13조제2항”을 “제23조제2항”으로 하고,

제2호중 “법 제22조(제30조제2항)”을 “법 제35조(제46조제2항)”으로, “제31조제1항”을 “제47조제1항”으로 하며,

제3호중 “법 제36조제3항”을 “법 제4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【 9 】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- 경영수익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기금 조성의 신규제원 추가 삽입이 필요함.

주요골자

-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3조 (투자기금의 조성)에 개발부담금 항목을 추가 신설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(투자기금 및 조성) 제2항중 “제4호”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개발부담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10 】 양주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

○ 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○ 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과도하게 세분된 업종별 구분을 일원화 하여 축소 통합하고, 요금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적정한 요율인상 (9%)으로 지방 상수도의 재정 결함을 해소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"별표 3" 업종 구분표를 통합 조정함.
- 양주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"별표 2" 요금 요율표의 영업 1종 및 공공용 요율을 8.7% 인상 조정함.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수도급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(요금)중 별표 제2호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27조 (업종의 구분)중 별표 제3호 업종별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